

## 『국고예금』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국고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매년 4월30일 및 10월31일을 이자결산일(이하 결산일이라 한다)로 하며, 해당일이 휴일 또는 은행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도 해당일을 이자결산일로 봅니다.
- ② 이 예금은 매년 5월15일 및 11월15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며, 해당일이 휴일 또는 은행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**최종잔액에 대하여**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합니다.
- ④ 제②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는 원가처리하지 않고, 이자지급일에 해당 정부관서의 수입징수관 수입계좌에 납부합니다. 이 경우 납부절차·방법 등 수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3조 입금

이 예금에 입금가능한 어음·수표·기타증권 등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4조 거래방법의 제한

이 예금의 지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입출금기, 컴퓨터, 전화기를 통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5조 사고·변경사항 신고

통장, 인감 등의 분실·변경, 비밀번호 변경 등 제사고·변경사항 신고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**서면에 의해야** 하며, 필요한 경우 서면신고인이 소속한 해당관서의 공문의 제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.

### 제6조 해지

- ① 이 예금의 해지청구시 청구일 현재 부리적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차기이자지급일 해지 처리하며, 청구일 이후에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제①항의 부리적수에 대한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은 제2조 제①항 내지 제④항을 준용합니다.

### 제7조 거래중지계좌

이 예금은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지 않습니다.

### 제8조 예금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

은행은 「국고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예금계좌의 신설·폐지, 국고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한국은행에 제공합니다.